

의안번호	제792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7월 8일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792

제안연월일 : 2021년 7월 8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주문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함
-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제안이유

- 2022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적인 시행 예정
-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

붙임 : 건의안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보낼 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등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명감 아래 플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왔습니다.

‘강수장 약의회(強首長 弱議會)’ 구조 아래 지방의회는 법령의 제약과 권력의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意思)를 대변하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지방자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등 획기적 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개정 법률만으로는 아직도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 안에서만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이 가능하여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데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 조직 운영제도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의회에 필요한 예산마저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더 비대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능동적으로 견제하고 분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에는 교섭단체 활동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협상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지위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자치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164만 충청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있는 ‘인사권 독립’ 만으로는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1. 7.

충청북도의회